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가합516260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202328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가합516260 판결

전문

원고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민영

피고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김희윤

변론 종결2023. 4. 5.

판결 선고2023. 5.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4.부터 2023. 5. 1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이행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8. 12. 1. 원고가 C에 광주 남구 D 외 9필지 지상에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8. 12. 15.부터 2019. 12. 14.까지, 계약금액 5,250,000,000원, 계약이행보증금 1,050,000,000원(계약금액의 20%)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0. 4. 12. 준공기한을 2020. 12. 31.까지, 계약금액을 5,630,000,000원, 계약이행보증금을 1,126,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과 아래 나.항에서 변경된 내용을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2) C은 2020. 4. 16.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1,126,000,000원으로 하는 이행보증계약(이하 아래 나.항에서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내용의 보증서(보증서번호 F)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적용되는 피고의 계약보증약관 중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보증약관(을 제5호증)

제1조(보증책임)

① B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 등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①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 등에 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제5조(주계약의 해지)

보증채권자는 보증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증금의 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받아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공사기간의 연장 및 이행보증계약의 변경

1) 원고는 2020. 12. 28.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자 그 준공기한을 2021. 3. 31.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C과 체결하였고, 이후로도 몇 차례 준공기한을 연장하였다.

2) 원고와 C은 2021. 5. 13. 이 사건 공사 지연에 관해 긴급대책 회의를 한 후, 2021. 5. 17. C의 조속한 준공의무 및 이를 불이행할 경우 부담할 법적 책임에 관해 아래와 같은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행각서(갑 제4호증)

2. C은 E교회 성전 건축을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 ① 준공 신청을 5. 21.까지 접수하여 준공 허가를 취득하게 한다.
- ② 건축 미진 부분(건축 마감, 부대토목, 주차장, 조경, 준공청소 등)은 5. 28.까지 완벽하게 끝낸다.
- ③ 보험증권을 6. 30.까지 연장하여 5. 17.까지 접수하여 원고에게 준다.

3. C이 2.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후로 발생한 모든 민형사 책임을 C이 진다.

3) C은 2021. 5. 17. 피고와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을 2020. 4. 12.부터 2021. 6. 30.까지로 연장하는 추가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내용의 보증서(보증서번호 F)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지

- 1) C은 2021. 6. 2.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부도가 났다.
- 2) 원고는 2021. 6. 4. C에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통지(이하 '이 사건 해지 통지'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교회의 준공

이 사건 교회는 공사가 마무리되어 2021. 7. 2.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3에서 5, 8, 10, 11, 17, 18호증, 을 제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 1) C은 당좌거래 정지로 부도에 처하자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원고는 C의 공사 지연 및 부도 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1,126,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피고는 손해배상 예정액인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이 통상적인 계약이행보증금의 범위 내에 있고, 원고가

보증사고로 막대한 재산적 손해 및 무형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감액하여서는 안 된다.

3) 피고는 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추가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C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여 위 보증금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C의 미지급 추가공사대금채권은 기성금으로 이미 모두 지급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위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채권채무확정검사조서(을 제2호증)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 5,630,000,000원이 전부 타절정산금액으로 정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당시 C에 의해 이 사건 공사가 실질적으로 모두 완성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교회의 건축물대장상 시공사가 C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해지 통지 이후 진행된 공사의 작업일지에 C의 직원이 작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C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의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의무 불이행 및 위 이행보증계약 체결 당시 제출·첨부되었던 공사도급계약서(을 제4호증)상의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닌 C의 부도 사실을 이유로, 기한을 정하여 의무의 이행을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해지 통지도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보증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예정액인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이 원고의 손해액에 비해 현저히 크고, 원고의 이 사건 해지 통지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교회가 준공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보증채무 금액은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보증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채무자인 C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어(민법 제434조) 2023. 3. 2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채무자인 C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추가공사대금채권 170,130,000원¹⁾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계약이행보증금 관련 채권과 상계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21. 6. 4.로 소급하여 170,130,000원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보증책임의 성립

1) C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증사고의 발생 여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12, 14, 15, 19호증, 을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C이 이 사건 해지 통지 당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 의무를 불이행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해지 통지 이후로는 원고가 미진한 공사를 직접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공사 내용은 절토 및 우수관로 설치를 비롯한 진입로 설치공사, 옥상 우레탄 페인트 작업, 옹벽 설치, 조경수 식재, 소방시설 점검, 문 설치, 출입 마당 자갈 다짐 작업 등 단순한 인테리어나 사용상 편의를 위한 공사 이외에 이 사건 교회의 완공에 필요한 주요 구조 부분의 공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해지 통지까지 진행한 공사 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정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되어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해지 통지 후 원고가 위 공사를 진행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된 다음 비로소 이 사건 교회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③ 이 사건 교회의 건축물대장상 시공사가 C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해지 통지 이후 진행한 공사의 작업일지(갑 제12호증)에 작업자로 'C G과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새로 시공사를 구하지 않은 채 직접 잔여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도 시공사가 변경되지 않은 채 C이 계속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같은 기간 실제로 원고가 'C G과장'에게 직접 월급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건축물대장이나 작업일지의 기재만으로는 C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채권채무확정검사조서(을 제2호증)에 '타절정산금액'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계약금액 전부인 5,6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채권채무확정검사조서는 이미 원고가 2021. 8.경 미시공 부분이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2021. 8. 12. 현장조사 결과 일응 미시공 부분이 있음을 확인한 상태에서 채무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사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인 점, 그와 함께 원고에 의해 작성·제출된 타절정산합의각서(을 제3호증)에도 '최종타절정산금액'이라는 이름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최종 공사대금 58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채권채무확정검사조서의 '타설정산금액'은 건축 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전체 공사대금을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일 뿐 공사 타설 당시의 구체적인 기성금을 특정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서류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해지 통지 당시 C이 사실상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당초 C과 2020.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로 약정하였는데, C이 이를 거듭 지연하자 설계변경이 없음에도 그 공사 지연을 반영하여 위 준공예정일로부터 수차례 준공기한을 연장하여 준 점, ② C은 2021. 5. 17. 이 사건 이행각서로 원고에게 2021. 5. 말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채 부도가 났고, 이에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해지 통지를 한 점, ③ 위 해지 통지 이전에 작성된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2021. 5. 말까지 이 사건 공사의 완성 및 준공승인을 받을 C의 의무'(2.항)가 적시되어 있는 한편, "C이 2.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후로 발생된 모든 민형사 책임을 C이 진다." (3.항)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해지 통지 전에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으로 C에 이행기한을 정하여 기한 내의 이행을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 체결시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을 제4호증) 일반조건 제34조에는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제1항 제2호)가, 계약 해지 절차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것'(제2항)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수급인인 C의 거듭된 공사 지연 및 최종적인 부도 처리로 인해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기한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해지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상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1) 보증채무 금액의 산정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지급의무가 있는 보증금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 정하는 보증금액과 주계약인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계약 해지에 따라

귀속시키기로 하는 계약보증금액이 모두 1,126,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 1,126,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책임의 제한 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 1,126,000,000원은 그 예정액이 사회관념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70%에 해당하는 788,200,000원(= 1,126,000,000원 × 70%)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보증책임도 위 계약이행보증금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나, 원고가 2020. 5. 20.까지 C에 지급한 공사대금 5,081,845,842원을 기준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준공을 위한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까지 안분하여 산정하는 경우 이 사건 해지 통지 당시 기성률은 92.15%에서 94.69%2)

로서

미이행 공사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은 298,953,000원에서 455,300,000원3) 에 불과하다. 이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이행보증금액 1,126,000,000원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다.

② 이 사건 공사의 상주감리원으로 근무한 H의 진술서(갑 제17호증)에 이 사건 해지 통지 당시 약 80에서 85%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H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기억에 근거한 것으로 보일 뿐 공중별 집계표나 내역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C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약 1,98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1. 10. 21.자 공문(갑 제22호증)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공문에서 잔여공사의 직접 진행으로 1,339,563,525원이 지출되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그 산정 자료가 된 입출금거래내역의 상당 부분은 이 사건 교회의 사용승인이 마쳐진 2021. 7. 2. 이후에 지출된 부분이고, 이를 제외하는 경우 이체금액의 합계가 위 1,339,563,525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공문만을 근거로 C의 공사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또는 공문에 기재된 직접 공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위 공문 외에는 달리 주장하는 손해액 1,980,000,000원의 구체적인 액수나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교회의 사용승인을 마친 후 2021. 8.경 작성한 공사비 내역(을 제8호증)에는 "6월 ~ 7월까지 교회 직영 공사비"로 "인건비, 자재비, 장비사용료 등 200,000,404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원고는, C이 2018. 12. 15.부터 이 사건 해지 통지가 있는 2021. 6. 4.까지 약 2년 6개월에 걸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전기, 통신 등의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일부 미진한 공사를 진행하여 위 2021. 6. 4.부터 28일 후인 2021. 7. 2. 이 사건 교회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가 C의 공사의무 불이행으로 직접 진행한 공사의 내용이나 기간은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사항목 및 기간이나 C이 진행한 공사내역 및 기간에 비해 경미한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3) 상계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계약보증은 그 성질이 보증보험과 유사하나,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증에 관한 민법 제434조 등의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따라서 B공제조합은 계약자인 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만큼 B공제조합의 보증채권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도 소멸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에 추가공사대금으로 170,13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23. 3.

28.자 준비서면으로 C의 위 추가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계약이행보증금 관련 채권과 상계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C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채권 및 이에 부종하는 피고에 대한 보증금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이 사건 해지 통지가 이루어진 2021. 6. 4.에 소급하여 C의 추가공사대금채권 170,13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 채권은 618,070,000원(= 788,200,000원 ~ 170,130,000원)이 남게 되었다.

다) 원고는 C이 자금난을 호소하며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준공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실제 기성률보다 큰 금액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였고, 지급한 기성금에는 위 추가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C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이미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범위는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의 보증금액에서 위 책임 감면 및 상계로 인한 부분을 반영한 618,070,000원이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위 618,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2. 3.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경수

판사장동규

판사신진경

1) 피고는 2023. 3. 28.자 준비서면에서 을 제1호증(현장조사 결과보고서, 2쪽 라.항)에 적시된 원고

인정 추가공사비 항목을 근거로 상계 주장을 하면서 자동채권 액수를 170,300,000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을 제1호증에는 '발주자 인정금액 170,13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자동채권 액수는 170,130,000원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2) ① 원고 주장에 따라 총 공사대금을 5,800,000,000원으로 보고 최종 공사 마무리 시점을 2021. 6. 30.로 보는 경우 92.15%, ② 원고 주장에 따라 총 공사대금을 5,630,000,000원으로 보고 최종 공사 마무리 시점을 2021. 6. 30.로 보는 경우 93.82%, ③ 피고 주장에 따라 총 공사대금을 5,630,000,000원으로 보고 최종 공사 마무리 시점을 2021. 6. 22.로 보는 경우 94.69%가 이 사건 해지 통지 당시의 기성률이 된다.

3) $298,953,000\text{원} = \text{피고 주장에 따라 가장 적은 금액으로 계산한 } 5,630,000,000\text{원} \times 5.31\%(100\% - 94.69\%).$

$455,300,000\text{원} = \text{원고 주장에 따라 가장 많은 금액으로 계산한 } 5,800,000,000\text{원} \times 7.85\%(100\% - 92.15\%).$